

# 「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규칙안은 2016년 8월 25일 임영순의원의 5인이 발의하여 2016년 9월 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 의원 간 통일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지방의원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을 반영하고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신분증 규격 등을 정함(안 제3조)
-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, 신분증의 반납시기 등을 규정(안 제4조 및 제5조)

## 3. 관련법령(또는 참고자료)

- 지방자치법 제43조

## 4. 검토결과

- 제190차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(2015.11.17 개최)에서 채택 의결한 「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